이사회 운영규정

제정 2009. 7. 23. 개정 2013. 6. 11. 개정 2017. 8. 16.

개정 2022. 12. 22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기능)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 결한다.
- 제4조(구성) ①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③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1. 원장이 지명한 상임이사
 - 2. 선임(先任)비상임이사
 - 3. 선임(選任)이사 중에서 최연장자
 -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
- 제5조(간사)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진흥원의 이사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.
- 제6조(부의절차) 제3조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[별지 제1호] 이사회 안건 양식에 의하여 이사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정기이사회는 원장이 정관 제32조에 따른 예산 및 운영계획과 정관 제33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결산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하고, 임시이사회는 원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소집한다.
 -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, 개최일시, 장소 및 부의할 안건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

- 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지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통지는 [별지 제2호] 이사회 소집 통지서에 따른다.
- 제8조(의사진행) ①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- 제9조(의결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정관의 변경, 법인의 해산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3.6.11., 2017.8.16.>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원장을 제외한 당연직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서면결의)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서면결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[별지 제3호] 서면이사회 통지서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의결권 제한)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제9조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제11조의2(제척과 회피) ①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인(이하 '노동이사'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이사회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- 1. 노동이사 또는 노동이사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2 노동이사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직하였던 경우
 - ② 노동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 (回避)하여야 한다.
 - ③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라 제척(除斥)되거나, 제2항에 따라 회피(回避)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동이사는 제9조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[본조 신설 2022. 12. 22.]

제12조(회의록)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, 장소, 참석자 명단, 회의에서의 참석

- 자 발언내용,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작성된 회의록은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.
- 제13조(수당 등의 지급) ①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 및 감사(상임이사 및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)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2. 22.>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노동이사에게는 노동이사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12. 22.>

부 칙<2013. 6. 11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 8. 16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2. 12. 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다만, 제11조의2,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노동이사인 임원을 임명하기 위한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]

(전면표지)

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회 안건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	
년월일	(제 회)

(안 건 명)

제 출 자	
제출년월일	

(내 용)

의

결

사

항

- 1. 의결주문
- 2. 제안사유(개정사유)
- 3. 주요내용
- 4. 참고사항
 - 가. 관계법령
 - 나. 예산조치
 - 다. 기 타

[별지 제2호]

이사회소집통지서

수 신:전임원

제 회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일 시:
- 2. 장 소:
- 3. 부의안건 :

가.

나.

4. 기타사항 :

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회 의장 (인)

[별지 제3호]

서 면 이 사 회 통 지 서

이사	귀하
, ,	,, -,

다음 안건을 () 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.

의 안	번 호	제	목
제	ই		
제	호		
제	호		
제	ই		
제	호		

첨 부 : 1. 제 회 이사회 부의안 1부.

2. 서면결의서 1부. 끝.

20 년 월 일

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회 의장 (인)

(별 첨)

제 회 이사회

서 면 결 의 서

제 회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.

의안번호		제 목	결 의		의 견	
기한인	기단한모 에 득	찬성	반대	의 선		
제	호					
제	호					
제	호					
제	호					
제	호					

※ 의사표시는 해당란에 서명 날인함

20 년 월 일

이 사 (인)